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채유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55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5일

발 의 자 : 채유미 의원(1명)

찬 성 자 : 강대호, 권수정, 권영희,
김경우, 김기대,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제리, 김종무,
김춘례, 김평남, 김혜련,
노승재,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성흠제,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유 용, 이경선, 이광호,
이상훈, 이영실, 이정인,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최 선, 최웅식, 최정순,
한기영, 황규복, 황인구
의원(51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절차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두었는바, 이러한 위원회의 회의 소집 절차와 위촉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공공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서 회의 소집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안 제7조).
- 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뤄지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⑨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이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용역·법률자문 또는 감정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⑨ <u>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u>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 중 해당 심의·자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p>	<p>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u></p>
< 신 설 >	<p>1. <u>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u></p>
< 신 설 >	<p>2. <u>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u></p>
< 신 설 >	<p>3. <u>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이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관여한 경우</u></p>
< 신 설 >	<p>4. <u>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용역·법률자문 또는 감정에 관여한 경우</u></p>

< 신 설 >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신 설 >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